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
KOREAN ACADEMY OF STOMATOGNATHIC FUNCTION AND OCCLUSION

구강회복응용과학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1. 30
1차 개정) 2013. 11. 29.
2차 개정) 2017. 11. 01.
3차 개정) 2019. 11. 27.
4차 개정) 2022. 03. 04.

JDRAS(구강회복응용과학지) 편집위원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턱관절교합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생명윤리"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경우에서 헬싱키 선언(1964)의 규정이나 기본 정신에 위배되어 진행된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논문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비생명윤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자됨(Authorship)의 기준은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하였고,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

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등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작성에 기여, 또는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은 기여자(contributors)로 논문의 Acknowledgements에 표기할 수 있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임상연구의 경우, 확인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IRB 승인내용을 승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제6조(중복게재) ①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인용방법)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8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

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10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학술지 평가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